

제2025-73호 2025년 8월 14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374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 여수시 고시	제2025-378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4
○ 여수시 고시	제2025-37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 계획(변경)인가	6
○ 여수시 고시	제2025-380호	수산물 산지위판장 폐쇄 허가	19
○ 여수시 고시	제2025-382호	지방하천 점용허가(중흥천 제2025-10호, 연등천 제2025-11호)	2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4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	22
○ 여수시 공고	제2025-2419호	2025년 제4기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신생아 케어교실)	26
○ 여수시 공고	제2025-242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공사완료	34
○ 여수시 공고	제2025-2434호	202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접수(연장)	35
○ 여수시 공고	제2025-2436호	도로지정 공고(율촌면 신평리 1006-47번지 외 5필지)	42
○ 여수시 공고	제2025-2438호	전문건설업 폐업-유한회사 풀빛건설	45
○ 여수시 공고	제2025-2439호	전문건설업 등록-평강건설 주식회사	46
○ 여수시 공고	제2025-2456호	전문건설업 폐업공고-주유리플랜트	47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220호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48
○ 여수시 조례	제2221호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60
○ 여수시 조례	제2222호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 여수시 조례	제2223호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84
○ 여수시 조례	제2224호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7
○ 여수시 조례	제2225호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 여수시 조례	제2226호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 여수시 조례	제2227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 여수시 조례	제2228호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 8.14.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웅천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트레일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나. 사업의 개요: 도로개설 L=187m, B=7.5~14.5m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3-2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2,206.7㎡ → 변경) 2,130.2㎡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4. 12. 2.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현황		비고
						성명	주소	
합계				9,262.5	2,206.7	-	-	
1	여수시 웅천동	1873-2	주차장	3,337.4	640.7	여수시	-	
2	여수시 웅천동	1873-3	제방	2,742.2	20.0	여수시	-	
3	여수시 웅천동	1896-3	도로	2,885.9	1,249.0	여수시		
해수면				297.0	297.0			

○ 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소유자현황		비고
						성명	주소	
합계				6,487.5	2,130.2	-	-	
1	여수시 웅천동	1873-3	제방	2,726.4	6.0	여수시	-	
2	여수시 웅천동	1873-5	주차장	585.0	585.0	여수시	-	
3	여수시 웅천동	1873-6	제방	15.8	15.8	여수시	-	
4	여수시 웅천동	1896-3	도로	2,885.9	1,249.0	여수시	-	
5	여수시 웅천동	1896-4	도로	274.4	274.4	여수시	-	

7. 도시관리계획(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총괄조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78	32,337.0	521,293.2	35	7,847.0	114,893.0	73	19,092.00	323,404.50	70	5,398.0	51,271.7
일반도로	대로	4	5,708.0	171,240.0	-	-	4	5,708.00	171,240.00	-	-	-
	중로	33	12,496.0	196,552.5	6	3,310.0	16	5,852.00	88,306.50	11	3,334.0	42,046.0
	소로	84	10,413.0	88,420.7	18	3,111.0	46	6,799.00	54,522.00	20	503	2,655.7
보행자	중로	4	815.0	13,820.0	1	319.0	3	496.0	7,440.0	-	-	-
	소로	53	2,905.0	19,536.0	10	1,107.0	4	237.0	1,896.0	39	1,561.0	6,570.0
기타	-	-	31,724.0	-	-	-	-	-	-	-	-	-

※기타는 가각전제 등 포함

- 도로 총괄조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78	32,337.0	521,189.6	35	7,847.0	114,893.0	73	19,092.00	323,404.50	70	5,398.0	51,168.1
일반도로	대로	4	5,708.0	171,240.0	-	-	4	5,708.00	171,240.00	-	-	-
	중로	33	12,496.0	196,504.6	6	3,310.0	16	5,852.00	88,306.50	11	3,334.0	41,998.1
	소로	84	10,413.0	88,365.0	18	3,111.0	46	6,799.00	54,522.00	20	503	2,600.0
보행자	중로	4	815.0	13,820.0	1	319.0	3	496.0	7,440.0	-	-	-
	소로	53	2,905.0	19,536.0	10	1,107.0	4	237.0	1,896.0	39	1,561.0	6,570.0
기타	-	-	31,724.0	-	-	-	-	-	-	-	-	-

※기타는 가각전제 등 포함

■ 도로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98	12 ~ 14.5	국지 도로	259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웅천 마리나항만	일반도로	-	여고-209호 '09.12.24.	일방통행
변경	중로	3	98	12 ~ 14.5	국지 도로	259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웅천 마리나항만	일반도로	-	여고-209호 '09.12.24.	일방통행
기정	소로	3	1233	7.5	국지 도로	85	중로1-82	중로3-98	일반도로	-	여고-200호 '24. 5. 23.	일방통행
변경	소로	3	1233	7.5	국지 도로	85	중로1-82	중로3-98	일반도로	-	여고-200호 '24. 5. 23.	일방통행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98	중로 3-98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공사완료 후 지적측량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소로 3-1233	소로 3-1233	• 일부구간 선형변경	• 공사완료 후 지적측량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4	노외 주차장	마리나주변 웅천동매립지	2,904	증)55.7	2,959.7	여고-209호 '09.12.24.	

-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04	노외 주차 장	• 면적변경 - 당초 2,904㎡ → 변경 2,959.7㎡ 증)55.7㎡	• 공사완료 후 지적측량에 따른 주차장 면적 변경

2. ※ 금회 변경 사항 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주차장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주차장17	-	2,904	-	2,904	
변경		-	2,959.7	-	2,959.7	

3. ※ 금회 변경 사항 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4.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게재
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바. 관련도면: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14.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기정: 여수시 관문동 861번지 일원**

$\hookrightarrow$ 변경: 여수시 관문동 855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나. 명 칭 **기정: 원도심 노인복지관**

$\hookrightarrow$ 변경: 동백노인복지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A=2,257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2. 8.11.~2025. 7.31..**

$\hookrightarrow$ 변경: 2022. 8.11.~2026. 7.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불입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노인장애인과(☎061-659-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관문동	855	대	2,257	2,257	여수시					
합 계				2,257	2,257						

※소유권 변동 및 합병

○ 지장물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내용				소유자		비고
			종류	형식	면적	수량(㎡)	주소	성명	
1	관문동	855	-	-	-	-	-	-	지장물 부존재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5. 8.14.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수정동 7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근린공원 2)사업
 - 나. 명 칭 : 자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변경없음) : 226,867.4m²
 - 나. 규 모(변경없음) : 공원시설(64,616m²), 녹지 및 기타(162,251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공원과)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0. 6.25.~2027.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공원과(☎061-659-4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수정동	6	공원	3182	3182	여수시					
2	수정동	8	전	276	276	여수시					
3	수정동	18-1	전	210	210	여수시					
4	수정동	25-1	전	337	337	여수시					
5	수정동	32-1	도로	8543	8304	여수시					
6	수정동	33	임야	8053	8053	주형	여수시 여서로 134, 106동 405호 (여서동,현대건설아파트)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지상권	기정
						황윤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0 성원아파트 102-702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지상권	
						여수시					
	수정동	33	임야	8053	8053	여수시					변경
7	수정동	33-1 4	임야	1151	1151	여수시					
8	수정동	34	전	136	136	여수시					
9	수정동	35	전	87	87	여수시					
10	수정동	35-1	전	49	49	여수시					
11	수정동	36	전	426	426	여수시					
12	수정동	37	전	362	362	여수시					
13	수정동	37-1	전	38	38	여수시					
14	수정동	38	전	463	463	여수시					
15	수정동	38-1	전	139	139	여수시					
16	수정동	39	전	684	684	여수시		김점덕	부산 서구 남부민동 434		기정
								김점애	광주 서구 주월동 1287-9		
								정덕근	강원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110		
	수정동	39	전	684	684	여수시					변경
17	수정동	39-1	전	163	163	여수시					
18	수정동	39-2	전	245	245	여수시					
19	수정동	39-3	전	19	19	여수시					
20	수정동	40	전	380	380	여수시					
21	수정동	41	전	133	133	여수시					
22	수정동	41-1	도로	95	95	여수시					
23	수정동	42	전	67	67	여수시					
24	수정동	43-3	전	1	1	여수시					
25	수정동	45	전	564	564	여수시					
26	수정동	46	전	46	46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27	수정 동	47	임야	426	426	여수시					
28	수정 동	47-1	도로	473	473	여수시					
29	수정 동	48	대	1025	1025	여수시					
30	수정 동	49	전	1200	1200	진동인	전남 여수시 장군산길 81(오림동)				기정
						김정숙	전남 여수시 장군산길 81(오림동)				
	수정 동	49	전	1200	1200	여수시					변경
31	수정 동	50	전	175	175	김대현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3길20 103동204호 (진월동 아남아파트)	김서운	여수시 수정동 103	공유	
								김점덕	여수시 수정동 103	공유	
								김점애	여수시 수정동 103	공유	
								정덕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10	공유	
32	수정 동	51	전	493	493	여수시					
33	수정 동	52	전	721	721	여수시					
34	수정 동	53	전	1726	1726	여수시					
35	수정 동	54	전	661	661	여수시					
36	수정 동	55	대	185	185	국(기획재 정부)					
37	수정 동	56	대	340	340	여수시					
38	수정 동	57	전	192	192	여수시					
39	수정 동	58	전	1180	1180	여수시					
40	수정 동	60	묘지	116	116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41	수정 동	61	대	20	20	국(기획재 정부)					
42	수정 동	62	대	99	99	국(기획재 정부)					
43	수정 동	63	대	63	63	국(기획재 정부)					
44	수정 동	64	대	33	33	국(기획재 정부)					
45	수정 동	66	전	569	569	국(기획재 정부)					
46	수정 동	67	전	149	149	여수시					
47	수정 동	68-1	전	850	850	여수시					
48	수정 동	71	전	238	238	추동연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 로221409동902호(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49	수정 동	72	묘지	281	281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50	수정 동	73	전	364	364	여수시					
51	수정 동	74	묘지	314	314	여수시					
52	수정 동	75	대	231	231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53	수정 동	76	대	142	142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54	수정 동	77	전	44	44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55	수정동	77-1	전	485	485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56	수정동	78	전	1002	1002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57	수정동	79	전	182	182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58	수정동	80	전	926	926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59	수정동	81	도로	26	26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60	수정동	82	도로	20	20	조송기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324-11				
61	수정동	83-1	대	76	76	여수시					
62	수정동	83-2	전	447	447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여수시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공유 근저당권	
63	수정동	83-3	전	561	561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64	수정동	84-1	전	747	747	여수시					
65	수정동	84-2	대	337	337	여수시					
66	수정동	84-3	전	112	112	여수시					
67	수정동	85	도로	152	152	여수시					
68	수정동	86-1	대	185	185	여수시					
69	수정동	86-2	전	83	83	여수시					
70	수정동	86-3	대	23	23	여수시					
71	수정동	87	도로	17	17	여수시					
72	수정동	88	전	608	608	여수시					
73	수정동	89	도로	179	179	여수시					
74	수정동	90	도로	53	53	여수시					
75	수정동	91	도로	109	109	여수시					
76	수정동	92-1	임야	2036	1599	여수시					
77	수정동	99-3	대	694	72	주식회사미르산업	여수시 오동도로 102(수정동)				
78	수정동	101	대	288	48	여수시					
79	수정동	106	대	17	10	여수시					
80	수정동	107	임야	169	169	여수시					
81	수정동	108	임야	955	955	여수시					
82	수정동	109-1	전	420	420	여수시					
83	수정동	109-2	대	43	43	여수시					
84	수정동	110	전	579	579	여수시					
85	수정동	111	도로	162	162	여수시					
86	수정동	112	도로	112	29	김두찬					기정
						미등기		김두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87	수정 동	113-1	전	154	154	여수시					
88	수정 동	114-1 8	전	11	11	여수시					변경
89	수정 동	114-1 9	임야	86	86	여수시					
90	수정 동	114-2 0	임야	5	5	여수시					
91	수정 동	114-2 1	전	12	12	여수시					
	수정 동	114-2 2	전	10	10	여수시					
92	수정 동	115-1	전	245	245	박오순	여수시 종화동 3·0				
93	수정 동	115-3	대	17	17	박오순	여수시 종화동 3·0				
94	수정 동	116	전	83	83	장귀동	여수시 동정 2·3				
95	수정 동	117-5	전	195	195	여수시					
96	수정 동	117-6	대	29	29	여수시					
97	수정 동	177-7	임야	1388	1388	여수시					기정
	수정 동	117-7	임야	1388	1388	여수시					변경
98	수정 동	123-1	전	56	7	국(기획재정부)					
99	수정 동	260-1 1	전	13	13	여수시					
100	수정 동	263	임야	99	62	여수시					
101	수정 동	266	대	800	469	여수시					
102	수정 동	280	대	1497	0.1	여수시					
103	수정 동	332-9	대	659	659	여수시					
104	수정 동	332-1 2	대	5555	5555	국(기획재정부)					
105	수정 동	332-3 5	도로	1334	490	여수시					
106	수정 동	332-5 3	대	34	0.2						
107	수정 동	332-5 7	대	379	379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108	수정 동	332-5 8	대	38	0.1	여수시					
109	수정 동	332-6 8	대	1	1	국(기획재정부)					
110	수정 동	332-6 9	대	3544	3544	여수시					
111	수정 동	332-7 0	대	1652	1652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권	
112	수정 동	771	도로	1920	949	국(국토교통부)					
113	종화동	1-2	전	1168	1168	여수시					
114	종화동	2	수도용지	740	719	여수시					
115	종화동	3	공원	59645	59635	여수시					
116	종화동	3-1	공원	2917	2917	여수시					
117	종화동	3-2	공원	1023	1023	여수시					
118	종화동	6	도로	17	17	김양근	여수시 동정 1165				
119	종화동	7	도로	46	46	김기연	여수시 종화동 301				
120	종화동	8	전	360	360	김기연	여수시 종화동 301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21	종화동	9	전	952	952	여수시					
122	종화동	10	도로	13	13	김양근	여수시 동정 1165				
123	종화동	11	전	218	218	정찬우	여수시 종화동 68				
124	종화동	13	전	298	298	국(기획재정부)					
125	종화동	16-2	도로	1604	1604	여수시					
126	종화동	19	임야	331	331	여수시					
127	종화동	20	전	258	258	여수시					
128	종화동	21	도로	192	192	여수시					
129	종화동	22	전	245	245	여수시					
130	종화동	23	전	136	136	김기연	여수시 종화동 301				
131	종화동	24	전	152	152	김홍봉					기정
	종화동	24	전	152	152	미등기		김홍봉		토지대 장상 소유자	변경
132	종화동	29	전	502	502	최동균	여수시 동정 226				
133	종화동	31-1	전	879	879	여수시					
134	종화동	33	전	109	109	여수시					
135	종화동	36	전	20	20	여수시					
136	종화동	37	공원	1299	1299	국(기획재정부)					
137	종화동	39	전	79	79	최동균	여수시 동정 226				
138	종화동	41	전	83	83	여수시					
139	종화동	44	전	76	76	여수시					
140	종화동	47	공원	1468	1468	국(기획재정부)					
141	종화동	48	전	618	618	여수시					
142	종화동	51-1	전	314	314	여수시					
143	종화동	51-3	전	387	387	여수시					
144	종화동	56	묘지	618	618	여수시					
145	종화동	57-1	대	119	15	여수시					
146	종화동	58	대	149	1	여수시					
147	종화동	61-5	전	344	344	여수시					
148	종화동	67-3	전	175	2	여수시					
149	종화동	68-4	전	20	1	여수시					
150	종화동	69-6	대	139	139	여수시					
	종화동	69-7	대	3	3	여수시					
151	종화동	70	전	294	294	여수시					
152	종화동	73	전	430	430	여수시					
153	종화동	74	전	271	268	국(기획재정부)					
154	종화동	75-1	전	86	86	여수시					
155	종화동	75-2	도로	10	10	여수시		김양기	여수시 종화동 834	공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56	종화동	76-1	대	30	26	국(기획재정부)					
157	종화동	76-2	도로	122	61	국(건설교통부)					
158	종화동	76-7	대	8	8	여수시					
159	종화동	77-1	전	1590	1583	여수시					
160	종화동	77-2	도로	86	86	여수시					
161	종화동	78-1	전	476	476	여수시					
162	종화동	78-2	전	162	162	여수시					
163	종화동	78-3	도로	334	334	여수시					
164	종화동	79	대	33	33	김상옥	여수시 동정 293				
165	종화동	80	공원	371	371	국(기획재정부)					
166	종화동	82	전	268	268	여수시					
167	종화동	83	대	248	248	한국불교태고종자산관음사	여수시 종화동 83				
168	종화동	84-2	임야	410	410	한국불교태고종자산관음사	여수시 종화동 83				
169	종화동	87-1	전	641	641	여수시					
170	종화동	87-2	도로	102	102	여수시					
171	종화동	88-1	전	99	99	여수시					
172	종화동	88-2	도로	311	311	여수시					
173	종화동	88-3	대	526	526	여수시					
174	종화동	89	대	165	165	최봉규	여수시 종화동 90	조철호 서권명	여수시 종화동 89 여수시 종화2길 29	공유 공유	
175	종화동	90-1	전	519	519	여수시					
176	종화동	90-2	도로	1904	1904	여수시					
177	종화동	95-1	공원	33	33	국(기획재정부)					
178	종화동	95-2	도로	126	126	국(건설교통부)					
179	종화동	96-1	전	605	605	여수시					
180	종화동	96-2	도로	231	231	여수시					
181	종화동	96-3	전	36	36	여수시					
182	종화동	102-2	전	526	526	여수시					
183	종화동	103-1	도로	17	17	여수시					
184	종화동	104	전	1098	1098	여수시					기정
	종화동	104	전	1098	1098	박인곤 여수시	여수시 종화동 126				변경
185	종화동	105-1	전	13	13	여수시					
186	종화동	110	공원	13	13	국(기획재정부)					
187	종화동	117	전	271	271	최쌍동					기정
	종화동	117	전	271	271	미등기		최쌍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88	종화동	118	도로	10	10	최쌍동					기정
	종화동	118	도로	10	10	미등기		최쌍동		토지대 장상 소유자	변경
189	종화동	121	전	985	985	여수시					
190	종화동	122	전	152	152	여수시					
191	종화동	123	전	390	390	여수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한국산업 은행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여수지점	근저당 권	
192	종화동	124	전	545	545	여수시					
193	종화동	125	전	182	182	여수시					
194	종화동	129	전	364	364	이성광	여수시 동정 717				
195	종화동	136-2	전	139	139	여수시					
196	종화동	138	임야	902	902	여수시					
197	종화동	140-1	묘지	169	169	박소암	여수시 종화동 330				
198	종화동	141	묘지	238	238	여수시					
199	종화동	150	전	132	132	여수시					
200	종화동	155	공원	205	205	국(기획재 정부)					
201	종화동	164	전	112	112	박인두	여수시 동정 47				
202	종화동	174	묘지	417	417	여수시					
203	종화동	177	전	119	119	국(기획재 정부)					
204	종화동	178	전	99	99	국(기획재 정부)					
205	종화동	182	전	456	456	여수시					
206	종화동	183	전	965	965	여수시					
207	종화동	184	전	69	69	여수시					
208	종화동	185	전	324	324	여수시					
209	종화동	186	묘지	129	129	정진양					기정
	종화동	186	묘지	129	129	미등기		정진양		토지대 장상 소유자	변경
210	종화동	189	전	76	76	박경숙	여수시 공화동 269				
211	종화동	190	도로	3295	3295	여수시					
212	종화동	191	공원	2099	2099	여수시					
213	종화동	196	도로	169	169	국(국토해 양부)					
214	종화동	198	전	199	199	여수시					
215	종화동	200	도로	747	747	국(국토해 양부)					
216	종화동	202	전	483	483	여수시					
217	종화동	203	임야	374	374	여수시					
218	종화동	204	묘지	178	178	국(국토해 양부)					
219	종화동	205	전	30	30	여수시					
220	종화동	206	도로	76	76	국(국토해 양부)					
221	종화동	217	도로	1956	983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리 관계	
222	종화동	220	도로	255	255	국(국토해 양부)					
223	종화동	221	전	29	29	여수시					
224	종화동	222	도로	26	26	국(국토해 양부)					
225	종화동	224	전	1028	1028	여수시					
226	종화동	226	전	122	122	여수시					
227	종화동	227	전	83	83	여수시					
228	종화동	228	전	254	254	여수시					
229	종화동	229-2	전	190	190	여수시					
230	종화동	230	전	813	813	여수시					
231	종화동	231	임야	324	324	김상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9-10 다세대 201	대한가설 산업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6-5	가압류	
232	종화동	232	전	985	985	여수시					
233	종화동	233	전	208	208	여수시					
234	종화동	234	임야	562	562	여수시					
235	종화동	235	전	2076	2076	여수시					
236	종화동	236	전	1422	1422	여수시					
237	종화동	237	전	770	770	여수시					
238	종화동	239	전	403	403	여수시					
239	종화동	240	전	588	588	여수시					
240	종화동	241	전	502	502	여수시					
241	종화동	242	전	602	602	여수시					
242	종화동	243	임야	2106	2106	여수시					
243	종화동	244	전	727	727	여수시					
244	종화동	245	임야	668	668	여수시					
245	종화동	246	임야	2263	2263	여수시					
246	종화동	246-1 1	도로	1014	1	여수시					
247	종화동	246-1 2	도로	351	349	국(기획재 정부)					
248	종화동	247	전	152	152	여수시					
249	종화동	248	임야	596	596	여수시					
250	종화동	249	임야	335	335	여수시					
251	종화동	250	전	301	301	정소암우	여수시 동정 49				
252	종화동	251	전	728	728	여수시					
253	종화동	252	전	275	275	국(기획재 정부)					
254	종화동	255	전	13	13	김석만	여수시 종화동 444				
255	종화동	256	임야	20	20	여수시					
256	종화동	260	전	36	36	여수시					
257	종화동	261	전	21	21	여수시					
258	종화동	262	전	145	145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259	종화동	263	전	172	172	김형선					
260	종화동	264	임야	371	371	여수시					
261	종화동	265	전	167	167	정찬우	여수시 종화동 68				
262	종화동	265-1	전	61	61	여수시					
263	종화동	266	임야	397	397	국(기획재정부)					
264	종화동	268	전	238	238	여수시					
265	종화동	269	임야	413	413	여수시					
266	종화동	270	전	807	807	고근홍	여수시 수정동 125				
267	종화동	271	임야	570	570	여수시					
268	종화동	271-4	임야	479	479	여수시					
269	종화동	272	도로	12587	7734	여수시					
270	종화동	275	임야	599	599	국(기획재정부)					
271	종화동	276	임야	714	708	김창석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0-2	종고 새마을금고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15(종화동)	근저당권	기정
	종화동	276	임야	714	708	김태우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40-12, 103동 805호(주공아파트)				변경
272	종화동	277-5	전	120	120	여수시					
273	종화동	277-4	전	98	98	여수시					
274	종화동	279-2 2	전	9	9	여수시					
275	종화동	280-3	전	3	3	여수시					
276	종화동	282-2	전	55	54	여수시					
277	종화동	319	도로	949	24	여수시					
278	종화동	627	임야	231	231	김승관	경북김천시신음동847-2 금류아파트1동406호				기정
	종화동	627	임야	231	231	여수시					변경
279	종화동	628	임야	413	413	박평언	여수시 동정 65				
280	종화동	642	임야	383	383	여수시					
281	종화동	643	전	612	612	여수시					
282	종화동	644	전	264	264	여수시					
283	종화동	645	묘지	162	162	안동권씨 추밀공파 여수오천 문중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2길 52-1(오천동)				기정
	종화동	645	묘지	162	162	여수시					변경
284	종화동	646	전	5368	5368	충무정	여수시 종화동 677				
285	종화동	647	임야	579	579	김계숙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55 107동901호 (연향동부영아파트)				기정
	종화동	647	임야	579	579	강지선 강지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일로 952,1117호(목동, 로프트원 테릉입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 글비석로 479, 101동 1010호(상계동, 보람아 파트)				변경
286	종화동	649	전	972	972	여수시					
287	종화동	650-1	전	676	676	정채주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서1길 7-5(관문동)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신여수지점)	근저당 권, 지상권	기정
	종화동	650-1	전	676	676	여수시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288	종화동	651-2	전	1251	1251	여수시					
289	종화동	675-1	전	1,839	1,839	임이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8길 6(서교동)				
290	종화동	676	전	456	456	임이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8길 6(서교동)				
291	종화동	677	대	1805	1805	총무정	여수시 종화동 677				
292	종화동	678	묘지	129	129	안동권씨 추밀공파 여수오천 문중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2길 52-1(오천동)				기정
	종화동	678	묘지	129	129	여수시					변경
293	종화동	680	전	1907	1907	여수시					변경
294	종화동	684-3	전	10	10	여수시					
295	종화동	686	전	1180	1180	여수시		대한불교조 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공유	
296	종화동	686-1	구거	734	254	국(기획재 정부)					
297	종화동	687	전	142	142	임춘자	광주시 양림동 289-48				
298	종화동	688-1	대	232	206	대한불교 조계종제2 1교구 본사송광 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299	종화동	688-3	대	112	22	임이순	여수시 오림동 363	종교새마을 금고	여수시 종화동 1021-1	근저당 권	기정
	종화동	688-3	대	112	22	여수시					변경
300	종화동	688-5	대	74	54	곽고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2길 20-2(종화동)				기정
	종화동	688-5	대	74	54	여수시					변경
301	종화동	688-6	대	87	8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302	종화동	689	종교 용지	625	625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303	종화동	690-3	전	592	496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곽고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2길 20-2(종화동)	공유	
304	종화동	701	임야	754	14	종화동 번영위원 회	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 701				
305	종화동	701-5	임야	1863	1863	여수시					
306	종화동	702-1	대	88	88	여수시					
307	종화동	705	대	37	3	여수시					
308	종화동	709	대	50	2	이용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2길61 116동2101호 (길음동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기정
	종화동	709-1	대	1	1	이용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2길61 116동2101호 (길음동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변경
309	종화동	822-1 3	답	165	165	여수시					
310	종화동	822-1 4	답	598	276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311	종화동	824-1	전	268	268	여수시					
312	종화동	824-2	전	228	228	여수시					
313	종화동	825-1	전	338	338	여수시					
314	종화동	826-1	전	35	35	여수시					
315	종화동	1020	도로	11833	680	국(국토교통부)					

○ 지장물조서(변경)

연번	토지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수정동 33	감나무		6	주	황윤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17, 포레나 B동 1903호(웅천동, 포레나 여수웅천 디 아일랜드)		
		매실나무		9	주				
		밤나무		5	주				
2	종화동 8	분묘	-	개소	4	김기연	여수시 종화동 301		
3	종화동 117	수목	동백나무	주	47	최쌍동			
4	종화동 129	분묘	-		1	이성광	여수시 동정 717		
		수목	동백나무	주	5				
5	종화동 138	분묘	-	개소	1	김창현	경기도양시일산구마두동 821-1정발마을103동202호		
		상석	-	개소	1				
		비석	-	개소	2				
		수목	측백나무	주	13				
6	종화동 646	수목	감나무	주	6	충무정	여수시 종화동 6*7		
7	종화동 647	건물	울타리	식	1	강지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9, 101동 1010호(상계동, 보람아파트)		신규
		수목	감나무	주	1				
7	종화동 650-1	건물	석면스레트	㎡	38	정채주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서1길 *-5 (관문동)		
8	종화동 675-1	건물	석면스레트	㎡	34	임이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길 6 (서교동)		기정 변경
		건물	철제스레트	㎡	51.8				
		건물	석면스레트	㎡	36.5				
		건물	농막	식	1				
		수목	복숭아나무	주	1				
		수목	감나무	주	5				
		수목	동백나무	주	1				
		수목	매실나무	주	1				
9	종화동 676	건물	울타리	식	1	임이성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길 6 (서교동)		기정 변경
		창고	판넬	㎡	4				
		물탱크	1.0 ton	개소	1				
10	종화동 677	건물	울타리	식	1	충무정	여수시 종화동 677		
		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	100.2				
		건물	기와/철근 콘크리트	㎡	139				
		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	202.2				
11	종화동 678	분묘	-	개소	1	안동권씨추밀공파여수오천문중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2길 52-1(오천동)		
12	종화동 680	수목	감나무	주	20	권오철	여수시 종화동 753		
13	종화동 688-3	건물	석면스레트	㎡	60.4	임이순	여수시 오림동 363		
14	종화동 688-5	건물	석면스레트	㎡	59	곽고운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2길 20-2(종화동)		
		물탱크	1.0 ton	개소	1				
15	종화동 688-6	건물	기와/시멘트블럭	㎡	63.5	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16	종화동 689	건물	기와/ 시멘트블럭	m²	154.4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 사 송광사 대한불교조 계종 제21교구 본 사 송광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건물	기와/목재	m²	29				
		건물	기와/목재	m²	22.5				
17	종화동 690-3	건물	철제스레트	m²	91.8	대한불교조 계종 제21교구 본 사 송광사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12		
		수목	매실나무	개소	1				
		수목	회양목	m²	20				
18	수정동 49	석축조성용 석물		식	1	진동인	여수시 장군산길 81(오림동)		

수산물 산지위판장 폐쇄 허가 고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수산물 위판장에 대한 폐쇄 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 수산물 산지위판장 폐쇄 허가 사항

지정 번호	위판장 명칭	관리자	소재지	시설규모(㎡)		위판장 시설명세	비고 (사유)
				대지	건물		
2008-007	거문도수협 위판장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장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698	847	경매장, 보관시설 등	신규 개설하는 위판장으로 이전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중흥천, 연등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1. 하천의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내역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2025-10	중흥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도로시설관리과장)	여수시 중흥동 1638-95	98.3	교량보수 임시 강관비계 설치	2025. 9. 1. ~ 2025. 12. 31.	
2025-11	연등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청 (도로시설관리과장)	여수시 서교동 278 및 교동 628-1	34.5	교량보수 임시 강관비계 설치	2025. 9. 1. ~ 2025. 12. 31.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4.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기정) 2020.6.30. ~ 2025.12.31.**
변경) 2020.6.30. ~ 2027.12.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월내이주단지~ 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안산동, 소라면 죽림리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16,188.0㎡ - 규모 - L= 515m, B= 8.0 ~ 15.0m(2차로)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 업 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월내이주단지~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여수시 도로과	2025. 8. 14. ~2025. 8. 28.(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8. 14. ~ 2025. 8. 28. (14일간) ※**초일미산입**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58,661.0	16,188						변동 없음
1	안산동	536	도	8,332	63	공	여수시				
2	안산동	375-1	수	4,845	811	공	여수시				
3	안산동	산16-16	임	13	1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33,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산동	산16-16	임	13	13	공	여수시				변경
4	안산동	산17-12	임	1,343	1,343	오승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4 롯데아파트 7동 302호				
5	안산동	372-2	전	19	19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원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기정
	안산동	372-2	전	19	19	공	여수시	공유지 (28/1365)	김용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123번길 23-8, 3층 303호(쌍촌동)	변경
6	안산동	573-3	전	30	30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7	안산동	산21-1	임	1,052	1,052	이재규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38				
8	안산동	591	대	724	724	김병선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0, 118동 603동 (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산동	591	대	724	724	공	여수시				변경
9	안산동	614-4	전	1,739	1,739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변경
	안산동	614-4	전	1,739	1,739	공	여수시				변경
10	안산동	산51-31	임	292	292	김효수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안산동	산51-31	임	292	292	공	여수시				변경
11	안산동	647-5	구	397	397	국	건설교통부				기정
	안산동	647-5	구	397	397	공	여수시				변경
12	안산동	산51-30	임	344	344	주식회사 하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남1길 16-4(신기동)				기정
	안산동	산51-30	임	344	344	공	여수시				변경
13	안산동	산51-33	임	1,096	1,096	김영실	여수시 둔덕동 471-1				기정
	안산동	산51-33	임	1,096	1,096	공	여수시				변경
14	소면죽림리	94-4	대	81	81	최연옥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06(가곡동)				기정
	소면죽림리	94-4	대	81	81	공	여수시				변경
15	소면죽림리	산79-3	도	5,909	225	공	여수시				
16	안산동	532	도	2,465.7	15	공	여수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동										
17	안동	산16-15	임	39	39	백태술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기정
	안동	산16-15	임	39	39	공	여수시				변경
18	안동	산576-1	답	338	338	심상우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18-4(안산동)				기정
	안동	산576-1	답	338	338	공	여수시				변경
19-1	안동	산590-1	대	17	17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19-2	안동	산590-2	대	7	7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19-1	안동	산590-1	대	17	17	공	여수시				변경
19-2	안동	산590-2	대	7	7	공	여수시				변경
20	안동	산589-1	대	31	31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안동	산589-1	대	31	31	공	여수시				변경
21	안동	산593-1	대	17	17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동	산593-1	대	17	17	공	여수시				변경
22	안동	산592-1	전	200	200	김병선	전라남도여수시죽림로10, 118동603동(죽림사랑으로부영1차)				기정
	안동	산592-1	전	200	200	공	여수시				변경
23	안동	산614-6	전	613	613	김옥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4길 75-5(화장동)				기정
	안동	산614-6	전	613	613	공	여수시				변경
24	안동	산614-5	전	172	172	지우승 외 1인	여수시 서교동 373				기정
	안동	산614-5	전	172	172	공	여수시				변경
25	안동	산613-1	전	143	143	김상철	안산리 563	전산 미등록			
26	안동	산607-1	임	116	116	김해김씨도총관공파 시목종중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3길 16(신기동)				변경
	안동	산607-1	임	116	116	공	여수시				변경
27	안동	산611-1	답	147	147	김준환	260				기정
	안동	산611-1	답	147	147	공	여수시				변경
28	안동	산610	답	175	59	서영주	전라남도 여수시 심곡길 43-4 (안산동)				기정
	안동	산610-1	답	59	59	공	여수시				변경
29	안동	산609-10	전	189	189	박정식	학동 7-7				기정
	안동	산609-10	전	189	189	공	여수시				변경
30	안동	산609-11	임	26	26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 권지상권	여수시 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기정
	안동	산609-11	임	26	26	공	여수시				변경
31	안동	산609-12	임	2	2	오정연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147, 805동 1502호	근저당 권지상권	여수시 산림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80-1(미평동)	기정
	안동	산609-12	임	2	2	공	여수시				변경
32	안동	산51-34	도	24	24	공	여수시				
33	안동	산579-5	대	5	5	공	여수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권리내용	성명	주소	
34	안동 산	579-4	도	259	148	공	여수시				
35	안동 산	651-15	도	3	3	공	여수시				
36	안동 산	537-4	임	21,554	1,351	공	여수시				
37	안동 산	537-3	임	1,935	33	공	여수시				
38	안동 산	372-1	전	259	259	김춘호 외12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이월대로 449, 131동 101호(반림동, 노블파크아파트)				기정
	안동 산	372-1	전	259	259	공	여수시	공유지 (28/1365)	김용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123번길 23-8, 3층 303호(쌍촌동)	변경
39	안동 산	산16-13	임	98	98	백태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5길 9-13(안산동)				기정
	안동 산	산16-13	임	98	98	공	여수시				변경
40	안동 산	산16-14	임	1,686	1,686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동 산	산16-14	임	1,686	1,686	공	여수시				변경
41	안동 산	573-1	전	2,033	2,033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동 산	573-1	전	2,033	2,033	공	여수시				변경
42	안동 산	579-3	대	9	9	공	여수시				
43	안동 산	579-6	도	4	4	공	여수시				
44	안동 산	651-14	도	13	13	공	여수시				
45	안동 산	580-3	대	11	11	김효수 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614				기정
	안동 산	580-3	대	11	11	공	여수시				변경
46	안동 산	577-1	대	123	123	공	여수시				
47	안동 산	573-4	전	28	28	김철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2로 33, 103동 4303(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기정
	안동 산	573-4	전	28	28	공	여수시				변경

2025년 제4기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 강사모집 공고

2025년도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제4기 임신부 프로그램 운영 강사(시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여 수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명	채용분야	인원	프로그램	근무부서 (근무지)
	계	4명		
임산부 프로그램	시간제 근로자	1명	신생아 케어 교실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실

※ 수강생 모집정원이 50% 미만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으며, 내부 상황에 따라 강의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강좌 기간 및 요일은 협의 후 변동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자격소지자

나. 해당분야 교육 및 지도 실무 경력이 있는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모집일정

가. 공고기간 : 2025. 8. 13.(수) ~ 2025. 9. 5.(금) (24일간)

나. 접수기간 : 2025. 9. 1.(월) ~ 9. 5.(금) (5일간)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 또는 전자 우편 접수

라. 접 수 처 :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659-4087)

※ 주 소 :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e-mail: kjw0730@korea.kr

마. 합격자발표 : 2025. 9. 12.(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프로그램 시작일 : 2025. 11. 3.(월)

※ 내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수시 변경될 수 있음

사. 프로그램 운영기간(4기) : 2025. 11. 3.(월) ~ 12. 12.(금)

– 신생아케어교실 : 수/ 10:00~11:00

아. 기타사항

– 고용의 시작과 종료일, 근무시간은 사업일정 및 사업예산 지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 1]

나. 강사이력서 1부 [첨부 2]

다. 강의 계획서 1부 [첨부 3]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4]

마. 공공기관 관련 근무경력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관련 자격·면허증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사. 봉사활동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서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5. 근무조건

가. 프로그램 운영기간(4기) : 2025. 11. 3.(월) ~ 12. 12.(금)

- 신생아케어교실 : 수/ 10:00~11:00

나. 근무시간 : 주1회 / 1개 강좌 당 60분

다. 사업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라. 장 소 :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실

마. 강사수당 : 기본(1시간)당 80,000원

바. 임산부(강사모집) 프로그램

강좌명 (내용)	운영기간		모집 인원(명)	응시자격 요건
신생아 케어 교실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특징 및 목욕법 등)	수	10:00~11:00	1	○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내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수시 변경할 수 있음

6. 선발기준

가. 서류심사(관련분야 자격증 급수 및 공공기관 경력사항 등)와 심사에서 취득한 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선발

나. 동점일 경우 임산부 프로그램 강의 경력자 우대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1-659-4087)으로 문의 바랍니다.

8. 붙임서류

- 1. 강의신청서 1부.
- 2. 강사 이력서 1부.
- 3. 강의 계획서 1부.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첨부. 1】

강 사 신 청 서			
모집분야		강좌명	
인적사항	성명		
	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주요경력 (업무관련)	- - - -		
자 격 증 (업무관련)	- - -		
현 근무처 및 활동단체		연락처	HP : E-mail :
상기 본인은 여수시보건소 임신부프로그램 강사로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강의계획서 1부 3.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2】

강사 이력서

1. 일반사항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현거주지)	(도로명주소로 기재)		
핸드폰		E-mail	

2. 학력사항(고졸이상 학력만 기재)

학교명	졸업년도	전공	학위	비고

3. 강의경력(해당 강좌와 관련된 강의경력만 기록)

교육기관명	강좌명	활동기간	강좌내용	비고

4. 자격사항(해당 강좌와 관련된 자격증만 기록하며 사본 첨부 - 원본지참)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발급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3】

강의 계획서

□ 강좌명 :

강사명 :

(서명)

강의목표	
지도방침	

회차	월 일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교재비 및 재료비	※준비물, 교재비, 재료비 산출 내역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수시보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정신건강사업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모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수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축법」제29조에 따라 제2023-허가과-공용건축물-47호(2023.12. 1.)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14.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묘도동 2020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나. 명 칭 :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351.84㎡(건축면적), 314.28㎡(연면적)

나. 규 모 : 지상 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2023.12. 1.

나. 공사완료일: 2025. 5.16.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신산업에너지과(☎061-659-3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202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추천)

「여수시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운영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을 위한 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연장) : '25. 8. 12. ~ 8. 29.

※ 당초 : '25. 6. 9. ~ 8. 8.

2. 선정기준

가.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아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자

1) 관 계 : 2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2) 법조계 : 부장급 이상 전·현직 판·검사

3) 재 계 : 기업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4) 학 계 :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권위자

5) 군 인 : 전·현직 장성

6) 체육인 :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

7) 문화·예술인 : 유명작가, 배우, 언론인, 기타 예술인 등

8)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나. 제외대상 :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한 자

3. 대상자 추천 : 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5.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7)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자랑스런
여수인 담당자

6. 제출서류

가. 추천서 2부

나. 이력서 2부

다. 공적조서 2부

라.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마.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7. 대상자 선정 :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8. 시 상 : '25. 10. 17.(2025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5. 8. 12.

여 수 시 장

【붙임1】 추천서식

추천서

<추천대상자>

추천부문		본 적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상기인은 여수지역 출신으로서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여수시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있기에 자랑스런 여수인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서류
1. 이력서 2부
 2. 공적조서 2부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025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사 진)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만 세)
주 소					
등록기준지					
E-mail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2025년 월 일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뒤쪽)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율촌면 신평리1006-47번지 외 5필지(1006-40, 1006-44, 산46, 산46-9, 산46-11번지)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8. 12.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신평리1006-47번지 외 5필지
(1006-40, 1006-44, 산46, 산46-9, 산46-11번지)
2. 도로면적 : 865㎡
3. 도로길이 : 122.83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7,161	865	
율촌면 신평리	1006-47	과	4,384	288	
	1006-40	대	328	21	
	1006-44	중	1,556	96	
	산46	임	694	317	
	산46-9	임	99	43	
	산46-11	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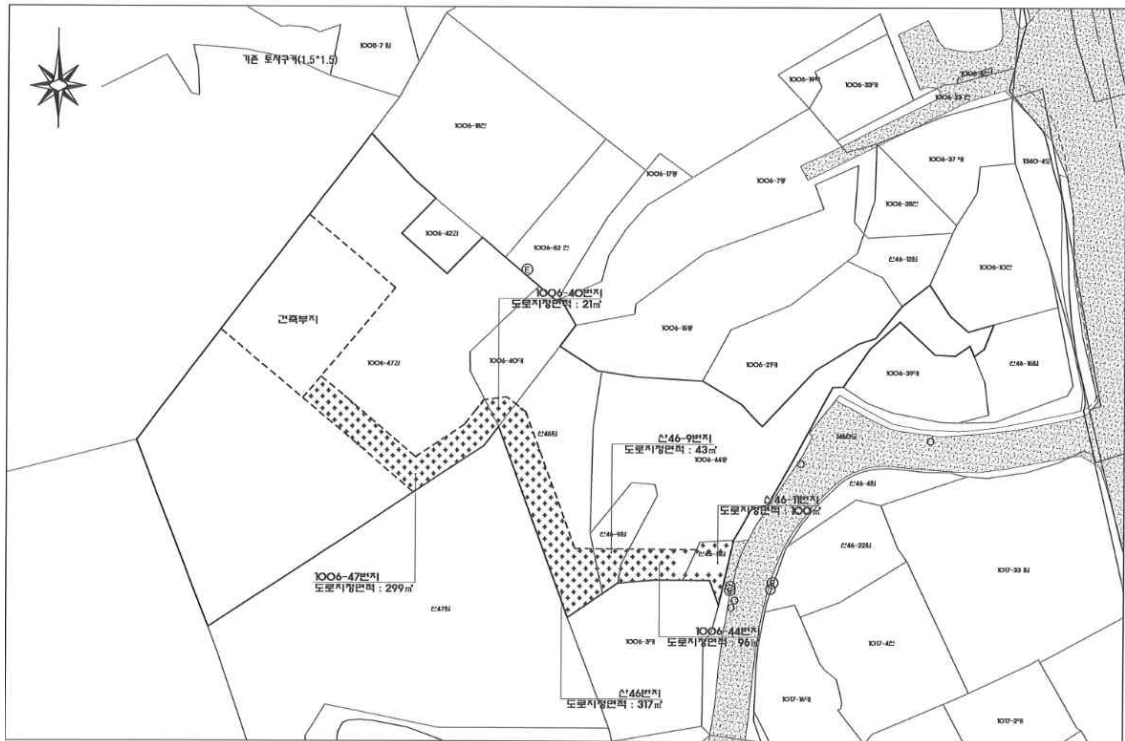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한회사 플빛건설 (신*숙)	전남 여수시 조은길 18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 2008-06-01)	206214-0009366	2025.8.12.	사업포기 (면허반납)

2. 공고 기간: 2025. 8. 12. ~ 2025. 8. 26.(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평강건설 주식회사(김*환)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로 552, 2층 202호
-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5936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여수-25-다-0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025. 8. 12.

2025년 8월 12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우리플랜트 (정*훈)	전남 여수시 망양로 1116-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여수-22-아-07)	206211-0047891	2025.8.13.	사업포기 (면허반납)

2. 공고 기간: 2025. 8. 13. ~ 2025. 8. 27.(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경민



여수시 조례 제2220호

붙임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1부

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10.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여수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무)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가. 시: 총괄부서 담당 국장

나. 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

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시 누리집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거가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

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7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20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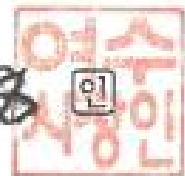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권재영



여수시 조례 제2221호

붙임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기관”이란 여수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3. “노동이사”란 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

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8조(정수) 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0조(책임 등)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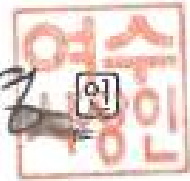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근영



여수시 조례 제2222호

붙임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를 “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증진”을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중전의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으로, “따라서”를 “입각한”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고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중전의

제6조제1호 중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노인복지법」 제25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 할”을 “생활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강관리 사업”을 “건강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노인복지법 제31조”를 “법 제31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6조 중 “수행 할 수 있는”을 “수행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고령친화도시”로 한다.

제36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7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를 제41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

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7조) 제2항제3호 중 “고령친화”를 “고령친화도시”로 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7조(종전의 제34조) 본문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종전의 제38조)제1항 중 “예산범위 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9조)제2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u>	<u>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교육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증 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
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
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고령친화”라 함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서 노인의 선호
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노
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
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인
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하는 정책을 말한다.

8. (생 략)

<신 설>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
--란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 입각한 --- 고려--
--.

3. -----
--이란 -----.

4. (현행 제8호와 같음)

6.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
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
호를 말한다.

9.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교육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5. -----
--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

----- 보건·복지·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

--.

1.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보건복지 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노인 <u>건강증진 사업</u> 및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 2.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제6조(보건복지 증진 등) ----- ----- ----- -----.
제7조(노인건강진단 등) ① <u>시장</u> 은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 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 건소 또는 시가 정하는 건강진 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 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보건교육은 보건소 또 는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 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u>건강증진사업</u> ----- ----- 2. ~ 7. (현행과 같음) 8. <u>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 사업</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사	제7조(노인건강진단 등) ① <u>시장</u> 은 법 제27조제1항----- ----- ----- ----- ----- ----- -----.
	② <u>법 제27조제1항</u> ----- ----- ----- ----- -----.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사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

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제12조(생업지원) ----- 법 제25조

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14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6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

-----.

제14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

생활할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경로우대) ① ----- 법 제26조제1항-----

-----.

② ----- 법 제26조제2항 -----

-----.

③ -----
-----.

1. ----- 건강관리 사업

여야 한다.

제26조(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신 설>

<신 설>

여야 한다.

제26조(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

제27조(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기준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u><신 설></u> <u>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2. (생 략) 3. <u>고령친화</u> 관련 추진 사항 4. (생 략)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u>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제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u> <u>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u> ② -----. 1. 2. (현행과 같음) 3. <u>고령친화도시</u>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	--

<u>고 인정하는 사항</u>	<u>고 인정하는 사항</u>
<u>제28조</u> ~ <u>제33조</u> (생략)	<u>제31조</u> ~ <u>제36조</u> (현행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u>제34조</u>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u>제37조</u> (수당 등) ----- ----- ----- <u>범위에서</u> ----- -----. ----- -----.
<u>제35조</u> (생략) <u>제5장 보칙</u> <u><신설></u>	<u>제38조</u> (현행 제35조와 같음) <u><삭제></u> <u>제6장 보칙</u>
<u>제36조</u> · <u>제37조</u> (생략)	<u>제39조</u> · <u>제40조</u>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u>제38조</u>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u>예산범위</u> 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u>제41조</u>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 <u>예산 범위에서</u>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39조</u> (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	<u>제42조</u> (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u>범위</u> 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u>제40조</u> (생 략) <u>제41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u>범위에서</u> -----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43조</u> (현행 제40조와 같음) <u><삭 제></u>
--	--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기경



여수시 조례 제2223호

붙임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여수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조경자



여수시 조례 제2224호

붙임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 ① 시장이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

제11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한다.

제1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김기남



여수시 조례 제2225호

붙임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 및 활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
2. 건설용역업의 경우 관내 등록된 건설용역업체
3. 관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와 현장인력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적으로”를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전망
3. 지역 내 생산 및 유통자재와 건설용역업, 장비의 이용률 제고 방안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5. 제3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력 및 이행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를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마목) 중 “경험과 경험”을 “경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u>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u>	④ ----- ----- ----- -----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 및 활용하도록 ----- -----.
<u><신 설></u>	1. <u>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u>
<u><신 설></u>	2. <u>건설용역업의 경우 관내 등록된 건설용역업체</u>
<u><신 설></u>	3. <u>관내 지역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와 현장인력</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u>정기적으로</u>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 ----- ----- ----- <u>연 1회 이상</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5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 현황과
전망

3. 지역 내 생산 및 유통자재와
건설용역업, 장비의 이용률 제
고 방안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5. 제3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력 및 이행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시 누
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5조의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나. (생략)

다. 지역건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생략)

마.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업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라. -----
- 경험----

④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생 략)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 제>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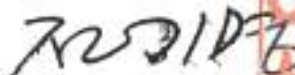
<삭 제>

제13조(회의) <삭 제>

<u>집을 요구하는 경우</u> <u>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③ ~ ⑤ (생략)</u> <u>제16조 (생략)</u> <u>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u>① ~ ③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u>제14조 (현행 제16조와 같음)</u> <u><삭 제></u>
---	---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226호

붙임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을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을 “택시운수종사자 등을”로,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 상자) ① (생 략)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 상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9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 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 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 육) ① ----- 법 제13조 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 수단--- 택시운수종사자 등을 ----- 위한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신 설>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 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통 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 설>	3.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 회, 4시간 이상
2. 장애인의 인권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 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신 설>

<신 설>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

육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시장은 제5항제1호 및 제3호

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

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기광



여수시 조례 제2227호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 실태조사”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각각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실태조사”를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시한”을 “실시한 주차장 수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조사”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차장”을 “주차장 수급”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

②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제3항에 따른 <u>주차장 실태조사</u> 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실태조사</u> 대상 가.·나. (생략) 2. <u>실태조사</u>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u>실태조사</u> 내용 가. ~ 다. (생략) 4. <u>실태조사</u> 방법 가.·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u> 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u>실시한</u>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 ----- ----- <u>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1. <u>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가.·나. (현행과 같음) 2. <u>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 3. <u>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u>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u> -----. ----- <u>실시한 주차장 수급</u> ----- ----- -----

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

③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

④ 주차장 수급 -----

-----.

제3조의2(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 설비 또는 장비 현황

②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여수시 조례 제2228호

붙임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를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
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
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
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
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

※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신청사항	[] 등록 [] 말소		
	전문분야 ※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첨부 서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앞쪽)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인	

(뒤쪽)

본 증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61-659-49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증 규격) 가로 12cm × 세로 9cm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②·③ (생략)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 -----은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 -----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주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주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

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
분야의 기술사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 ⑦ (생략)

<신설>

<신설>

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삭제>

<삭제>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u>제5조 ~ 제8조</u> (생략)	<u>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u> ③ <u>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 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u> ④ <u>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 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 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u> <u>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u> <u>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u> <u>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u> <u>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u> ⑤ <u>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u> <u>제6조 ~ 제9조</u>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	--